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신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경유)

제목 판정 결과 알림

1. 접수번호 : 2013-7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관련 사안

2.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귀하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사건 제보 내용은 피조사자의 1989년 본교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 문헌의 내용을 우리말로 기술함에 있어 총 59군데에 걸쳐 아래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재)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였다는 것이다.

1. 김도균, ‘파슈카니스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2. 김도균, ‘소련에 있어서 소비에트 법이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1988)
3. 한인섭,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 (1986)
4. 조영명, ‘러시아 혁명사’ (1985)
5. E. H. Carr (이지원 옮김), ‘볼셰비키 혁명사’ (1985)
6. Vladimir Ilich Lenin (김영철 옮김), ‘국가와 혁명’ (1988)
7. 마르크스·엔겔스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 엔겔스 저작선’ (1988)
8. 알란 헌트 (조성민 편역),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 (1987)

○ 제보자의 제보, 피조사자의 소명, 예비조사결과보고서와 본조사결과보고서 등 일건 기록을 종합하면, 위 문헌 1.의 번역문을 1군데에서, 문헌 2.의 번역문을 2군데에서, 문헌 3.의 번역문을 8군데에서, 문헌 4.의 번역문을 2군데에서, 문헌 7.의 번역문을 2군데에서, 합계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인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헌 1. 내지 3.의 저자들과 피조사자가 함께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정황상 피조사자가 그 번역문들이 타인의 문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단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위 문헌 4. 및 7.의 번역문에 대하여는 그것이 타인의 문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당시

1980년대 후반 법학석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외국 문헌, 특히 고전의 번역서 내용을 자신의 문장인 양 가장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역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 위 문헌 8.은 5군데에서 동일한 문장이 발견되는데, 피조사자가 ‘조성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출간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타인의 문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자신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부분적으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 나머지 제보 내용에 관해서는, 그 문헌들의 번역문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당 부분에서 피조사자가 위 문헌들보다 더 원문에 충실하게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타인’의 문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에서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러시아 공산혁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역사적 기술로서, 석사논문의 주요 요지와 학문적 독자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당시 공산권 서적에 대한 금지가 해제된 직후 당해 분야의 연구자료가 희소하였음에도 원서를 공동 번역하는 등 상당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인 점, 당시에는 번역서의 (재)인용과 자기 문장의 중복 사용에 관하여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었는데, 200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된 현행 본교 연구윤리지침을 1989년에 제출된 석사논문에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끝..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장

조인래

협조자

시행 연구진실성위원회- 9 (2015.06.26) 접수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880-5153 /전송 (02)882-5153 /

비공개